

 신안산대학교	<h2 style="margin: 0;">교원인사 규정</h2>	규정 번호	2-3-1
		제정 일자	1995. 3. 1.
		개정 일자	2024. 4. 26.
		책임부서/팀·계	교무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법에 준하여 신안산대학교 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11.14.개정>

제2조(교원의 구분) ①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 교원으로 구분한다. <2024.4.26. 개정>

②전임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으로 구분하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는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 강의전담교수 및 외국인 교수 등으로 구분한다. <2014.06.10., 2015.11.27., 2023.12.07.개정>

③비전임교원은 겸임교수, 명예교수, 초빙교수, 특임교수, 강사 등으로 구분한다.<2023.12.07.개정>

④전임교원의 직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2023.12.07.제정>

제3조(적용범위) ①본 규정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적용하며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 및 비전임 교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교원인사에 관하여 관계법령, 학교법인 순효학원 정관(이하“정관”이라 한다)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4조(겸직금지) ① 본 대학의 교원은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본 대학교의 교원이 다른 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을 위촉받는 경우나 국가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제5조(임용일자의 소급금지) 교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급하여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2. 임용에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발령을 취소하거나 직위해제 할 경우
3. 징계에 대한 재심결과에 따라 원 징계를 변경할 경우

제6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직위”라 함은 1인의 교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전직, 면직, 해임, 파면을 말한다.
4. “승진”이라 함은 하위 직급으로부터 상위 직급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5. “승급”이라 함은 호봉이 하급으로부터 상급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6.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7. “강임”이라 함은 상위 직급으로부터 하위 직급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8. “복직”이라 함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 중에 있는 교원을 본래의 직급에 복귀시킴을 말한다.

제2장 위 원 회

제7조(교원인사위원회) 본 대학교에 설치하는 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50조 규정에

따른다. <2014.6.10. 개정>

제8조(교원징계위원회) 본 대학교에 설치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58조 규정에 따른다. <2014.6.10.개정>

제9조(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본 대학교에 설치하는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임 용

제10조(교원자격) 교원은 본 대학교 교원자격기준 [별표1]이 정하는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결격사유) 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 의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2023.12.07.개정>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② 제1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교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 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임용원칙)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공분야에 있어서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사회적 공헌도가 뚜렷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 채용할 수 있다.

②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학과소속) 교원의 학과배치는 전공영역에 따르되 학과 통폐합 또는 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경력 산출) 연구경력 및 교육경력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연구경력과 교육경력은 이를 통산할 수 있다.
2. 동일한 기간 중 둘 이상의 기관에서 연구 및 교육경력이 중복될 경우에는 한 기관에서의 연구 또는 교육경력만 인정한다.
3. 연구 및 교육경력 산출 방법은 본 규정[별표5]에 의하며, 이를 적용함에 적용항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16.6.10.개정>

제15조(임용기간) 교원에 대하여는 다음의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다만, 신규로 임용 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최초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1. 교 수 정년으로 하되, 2022년도 이후 임용되는 교원은 5년내지 10년 범위내의 기간 <2022.3.31.개정>
2. 부 교 수 5년 <2015.11.30.개정>
3. 조 교 수 4년
4. <2015.11.30. 삭제>

제16조(신규임용) ① 신규임용은 학기 개시일인 3월1일과 9월1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조교수 이상 교원의 신규임용 시 구비서류는 [별표4] 와 같다.
- ③ 교원을 신규 임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 실적이 있어야 한다.

1. 최근4년 이내에 발표한 연구 실적이 200%이상이어야 한다.

2. 대학(전문대학)에서 교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자를 퇴직 시의 직급으로 다시 신규임용할 경우에는 과거에 발표한 연구실적물을 인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④ 박사학위소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등학교 교원 또는 조교 경력만을 가진 자는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⑤ 퇴직교원을 재임용할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직위보다 상위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행정기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이를 퇴직 전의 당해직급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담당과목이 대학과 대학원의 전공이 동일한 자를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과 대학원의 전공이 다른 경우 대학에서 전공한 과목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원의 연구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대학원에서 전공한 과목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원에서의 전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의 산업체 근무경력 또는 기타 연구 및 교육경력 등이 교수자격 기준에 충족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제17조(기간제 임용) ① 기간제 임용 시기는 년2회로 하되 3월1일과 9월1일에 한다. 다만 임용기간이 학기 중일 경우에는 그 만료일에 속하는 학기의 말일까지를 임용 기간으로 본다.

② <2015.11.27.삭제>

③ 교원의 기간제 임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현 직급에서 본 규정 제 20조에 따라 발표된 연구실적 점수 20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 다음 표에 의한 교원업적평가의 영역별 최소점수 및 총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봉사영역은 최소점수를 적용하지 않으나 총점에는 반영하며 총점은 누적 점수제를 적용한다.

구분 (임용기간)	교원업적평가점수		총점 (교육+연구+봉사 +산학협력)
	교육	연구+산학협력	
부교수	2,500	700	3,800
조교수	2,000	600	3,600

<2015.6.18.,2015.11.27 개정>

단, 최초 신규 임용자는 임용기간 동안의 실적을 직위별 평가점수의 재직년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위 제1호 및 제2호의 평가점수와 대학 발전기여도, 품위 및 제반규정준수 여부를 반영하여 교원 재임용 평정 기준표[별표 6]에 의하여 평점 70점 이상인 자로 한다. 단,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하지 못하면 재임용 하지 아니한다. <2015.6.18. 신설,2019.11.14.개정>

④ 교원에 대한 기간제 임용 심의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한다.

⑤ 심사결과 다시 임용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별도의 발령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⑥ 공무로 파견 또는 출장 중에 임기가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파견 또는 출장의 잔여기간 까지 임용기간으로 본다. 이때 그 잔여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⑦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5조의3제4항에 의거 휴직기간은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9.11.14.개정>

⑧ 임용기간 만료 전 정년자에 대하여는 정년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정년이 되는 학기말까지만 임용 한다.

⑨ 임용기간 중에 승진 또는 강임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다시 임용기간을 계산한다.

제18조(계약제임용) 교원의 계약제임용은 기간제 임용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며 급여에 관하여는 계약에 의한다.

제19조(승진) ① 승진임용 시기는 년 2회로 하되 4월 1일과 10월 1일로 한다.

② <2015.11.27.삭제>

③ 교원의 승진 소요연수는 다음 각 호 1의 기간 이상을 당해직급에서 재직하여야 한다.

1. <삭제>

2. 조교수에서 부교수 6년 이상

3. 부교수에서 교수 5년 이상

④ 제3항의 규정 중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교원에 대한 승진 심의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한다.

⑥ 정년보장 교원의 심사는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 규정에 따른다. 단, 특별승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021.12.23.개정>

⑦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승진임용 할 수 없다.

1.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 중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 정직 시 18개월

2) 감봉 시 12개월

3) 견책 시 6개월

⑧ 교원의 승진 최소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현 직급에서 본 규정 제20조에 따라 발표된 연구실적 200점 이상을 취득 하여야 한다.

<2014.6.10.개정>

2. 다음 표에 의한 교원업적평가의 영역별 최소점수 및 총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봉사영역은 최소점수를 적용하지 않으나 총점에는 반영하며 총점은 누적점수제를 적용한다. <2014.6.10.개정>

구 분	교원업적평가점수		총 점 (교육+연구+봉사+ 산학협력)
	교육	연구+산학협력	
부교수 → 교 수	3,000	900	4,300
조교수 →부교수	2,800	800	4,000

3. 제1호 및 제2호의 평가점수와 대학 발전기여도, 품위 및 제반규정준수 여부를 반영하여 교원 승진 임용평정 기준표 [별표6]에 의하여 평점 80점 이상인 자로 한다. 단, 1호 및 2호를 충족하지 못하면 승진 임용 하지 아니한다. <2015.6.18.신설,2019.11.14.개정>

제19조의1(특별승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특별승진대상이 될 수 있다. 단, 승진일은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2021.12.23.개정>

1. 재직 중 대학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자가 공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

2. 명예퇴직 신청자가 제19조(승진)의 ⑧항 각 호를 충족하고 금품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의 주요 비위로 중징계를 받지 않은 경우

제20조(연구실적 심사기준) ① 연구실적물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평 가 항 목		점 수
학술 논문	1. 국제학술지(SCI, SSCI, A&HCI에 의해 공인된 국내외 학술지)	200
	2. 박사학위논문	200
	3. 석사학위논문	150
	4.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후보지	150
	5. 기타 국제학술지	150
	6. 전국규모 국내학술지	100
학술 저서	1. 국제전문학술서	200
	2. 국내전문학술서, 대학교재 (ISBN 부여)	150
	3. 대학교재용 번역서 (ISBN 부여,250Page이상)	150
	4. 1·2종 도서 (초/중/고)	80
	5. 편저 (ISBN 부여)	80
	6. 저서개정판 (ISBN 부여)	50
학술 발표	1. 국제학술회의(학술대회) 논문 발표	100
	2. 국내학술회의(학술대회) 논문 발표	80

<2019.11.14.개정>

② 연구실적물의 인정을 적용방법은 [별표 2] 에 의한다.

③ 예·체능계 및 창작실기계 연구업적 평가는 [별표 3] 에 의하여 심사한다.

제4장 신분 보장

제21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 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자녀(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 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2014.6.10.개정>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2014.6.10. 개정>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학교의 구조개혁 등 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2021.8.20. 신설>

제22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19.11.14.개정>
2. 제21조제2호 및 제4호,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2019.11.14.개정>

3. 제2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로 한다. <2019.11.14.개정>

4. 제2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19.11.14.개정>

5. 제2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2019.11.14.개정>

6. 제21조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2019.11.14.개정>

7. 제2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019.11.14.개정>

8. 제21조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19.11.14.개정>

9. 제21조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해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014.6.10.,2019.11.14.개정>

10. 제21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단, 직무 수행이 필요한 경우 임면권자는 근무 복귀를 요구할 수 있다. <2021.8.20. 신설>

제23조(휴직절차) 교원은 휴직개시일 15일 전까지 휴직원을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2021.8.20. 개정> <2023. 3. 30. 개정> <2024. 3. 20. 개정>

제24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인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총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총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1조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2014.6.10.,2019.11.14.개정>

제25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2019.11.14.개정>

② 제2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2019.11.14.개정>

③ 제21조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6.6.10.,2019.11.14.개정>

④ 제21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 기간 중 보수의 50%내에서 지급한다. <2021.8.20. 신설>

제26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 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 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은 3월 이내

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선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은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27조(호봉의 승급) ① 교원의 승급은 본 대학의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발령한다.

② 정기 승급은 매월 1일에 실시한다.

제28조(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다만, 총장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정년에 도달한 교원은 당해 학기말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29조(면직) ① 교원의 사망 시는 사망진단서에 의해 이사장은 직권으로 면직 발령 한다.

② 의원면직의 경우에는 자필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파면) 교원의 파면은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장 징 계

제31조(징계의결 요구) ① 총장은 교원 중에서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행한 후 이사장에게 징계 제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총장 자신에 관한 사건이나 감독관청의 요구에 의한 징계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를 요구한다.

② 총장의 징계제청이 있으면, 이사장은 이사회회의결 후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제32조(징계사유) 교원의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

1. 사립학교법, 교육 관계법령, 정관 및 기타 본 대학 제 규정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불이행,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할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제33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34조(징계의 효력) ①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전액 삭감한다. <2019.11.14.개정>

②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를 감한다.

③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35조(징계의 절차) 교원의 징계절차는 교원인사규정 제8조에 따른다. <2014.6.10.개정>

제36조(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6장 급 여

제37조(급여) 교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장 복 무

제38조(복무)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장 인 사 기 록

제39조(인사기록) 교원의 인사에 관한 일체의 기록, 관리 및 보관은 본 대학 교무처에서 담당한다.
<2015.11.27. 개정> <2021.8.20. 개정> <2023. 3. 30. 개정> <2024. 3. 20. 개정>

제40조(서류보관) 인사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인사서류를 비치 보관한다.

1. 임용에 관한 서류
2. 포상에 관한 서류
3. 징계에 관한 서류
4.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5. 인사 통계에 관한 서류
6. 기타 필요한 서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재직 중인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규정에 따른 조교수로 보며, 종전의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임용 평가 시 업적평가 반영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 개정에 따라 제17조 제3항 2호의 교원업적평가 직위별 점수 반영은 2016년부터 적용하며 적용 시 까지 해당 실적은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기간 변경에 따른 업적평가 반영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2016년 2월 이전

에 재임용된 부교수의 교원업적평가점수는 변경 전 기준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교원업적평가의 영역별 최소점수 및 총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봉사영역은 최소점수를 적용하지 않으나 총점에는 반영하며 총점은 누적 점수제를 적용한다.

구 분	교원업적평가점수		총 점 (교육+연구+봉사+산학협력)
	교육	연구+산학협력	
부교수	2,800	800	4,0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의 제2조(교원의 구분), 제11조(결격사유), 제16조(신규임용)은 2023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교원 자격 기준

연구교육 학 력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연구실적년수	교육경력년수	계
직 명	경력년수			
	교 수	4	6	10
	부 교 수	3	4	7
	조 교 수	2	2	4

※비고 : 연구실적년수와 교육경력연수는 서로 대치할 수 있다.

[별표2] 연구실적 인정기준

저자수	단독	2인	3인	4인이상
인정비율	100%	70%	50%	30%

[별표3] 예·체능계 및 창작 실기계 연구업적 평가 기준

분 야 별	연 구 실 적	환산인정점수
미술 분야	1. 국제전, 대전	
	가. 출품 4회	100
	나. 입선 2회	100
	다. 특선이상 1회	100
	2. 공인된 개인전 1회	100
	3. 공인된 단체전	
	가. 4인전 이상 4회	100
	나. 3인전 2회	100
	다. 2인전 1회	100
	4. 추천작가 이상 자격자로 공인된 단체전 출품 2회	100
체육 분야	1. 공인된 체육단체에서 개인 연구발표회 1회	100
	2. 국제경기 출전 1회	100
	3. 전국대회 입상 2회	100
	4. 국제공인심판자격 1회	100
	5. 전국대회공인심판자격 2회	100
음악 분야	1. 인정된 독창회 독주회 발표 1회	100
	2. 국내외에서 인정된 협연 및 발표 2회	100
	3. 인정된 발표회의 중주 및 반주 및 지휘 2회	100
	4. 인정된 종합연주회 중주 및 반주 4회	100
	5.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창작 <2023. 6. 23. 개정>	100
	6. 단독 공연 및 콘서트 개최 <2023. 6. 23. 개정>	100
	7. 대중음악공연 (국내 100석 규모 이상) <2023. 6. 23. 개정>	100
창작실기활동	1. 전국을 단위로 한 공인된 발표회	
	가. 특선 1회	100
	나. 입선 2회	100

[별표4] 임용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수량	비고
신규임용	교원 신규임용심사조사서	1	임용확정 후 2주 이내
	교직원 인사기록카드	1	
	신원진술서	1	
	기본증명서	1	
	건강진단서	1	
	주민등록등본	1	
	이력서	1	
	학력증명서 (학·석·박사)	1	
	경력증명서 (전경력)	1	
	연구실적물 200%이상 (최근4년 이내)	1	
기간제임용	연구실적물 (현직급에서 발표된 실적)	200점	삭제
승진임용	교원 승진임용심사조사서	1	삭제
	연구실적물 (현직급에서 발표된 실적)	200점	

<2015.11.27.개정>

교수자격 인정을 위한 경력 환산율 산출기준

번호	경 력 내 용	환산인정율 (%)
1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연구를 대학,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실적	100%
2	국방대학원에서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과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	100%
3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직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100%
4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	100%
5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 및 박사 재학기간(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100%
6	석사학위과정 이수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과정 재학기간(2년을 초과하지 못함)	100%
7	학력인정을 받은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
8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70%
9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 단, 주당 5시간 이하는 30%, 주당 5시간 초과시에는 시간당 10% 가산하되 50%를 넘지 못한다.	30%~50%
10	중학교이상 교원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70%
11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70%
12	유치원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70%
13	대학 총(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	100%
14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의 체육코치	70%
15	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 하지 못한 자의 석사 및 박사과정 재학기간 (석사과정은 2년, 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70%
16	대학에서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100%
17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100%
18	대학, 전문대학의 전공분야를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100%
19	외교관, 판사, 검사로 근무한 경력	100%
20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변리사, 건축사의 개업기간	100%
2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공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되고 전문대학 교원으로서 담당할 과목이 이에 연계될 수 있는 경우	100%
2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	100%
23	의과대학, 한의학대학, 수의학대학 졸업자의 의원 또는 병원 개업기간	100%
24	국가, 공공단체 또는 해당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	100%
25	국가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전임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100%
26	신학대학 졸업자가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하거나,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할 경력	100%
27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에 관한 단체의 주요 간부 근무경력	100%

[별표 6]

교원 재임용/승진임용 평정 기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연구실적 (10)	연구실적	200점 이상	10	
		200점 미만	0	
교원업적평가 (40)	교육업적	직위별 점수 충족	15	
		직위별 점수 미충족	0	
	연구+산학협력	직위별 점수 충족	15	
		직위별 점수 미충족	0	
	교원업적평가 총점	직위별 점수 충족	10	
		직위별 점수 미충족	0	
대학발전 기여도 (40)	○ 교원으로서의 충실도		15	총장평가
	○ 대학의 정책 및 발전 기여도		15	
	○ 교내봉사활동		10	
품위 및 제반규정준수 (10)	교육자로서의 품위 및 학내 제반규정 준수 여부		10	인사위평가
총 점			100점	

항목별 세부 평정기준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점수		
대학발전 기여도	○ 교원으로서의 충실도	강의 및 학생지도, 대학 및 학과의 행정업무 협조, 근무 태도, 학교행사 참여 등에 대한 평가	A (매우우수)	15점	
	○ 대학의 정책 및 발전 기여도	대학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 (취업, 총원, 산학협력 등) 및 발전기여도 등의 실적에 대한 평가	B (우수)	12점	
	○ 교내봉사활동	대학에서의 보직 및 각종위원회 등의 참여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	C (보통)	8점	
품위 및 제반규정 준수	○ 교육자로서의 품위 및 학내 제반규정 준수 여부	교육자로서 인격과 품위, 대학내의 제반 규칙 및 학사행정 업무 준수에 대한 평가	D (미흡)	3점	건당
			E (매우미흡)	2점	
			A (매우우수)	10점	
			B (우수)	8점	
			C (보통)	5점	
			D (미흡)	2점	
E (매우미흡)	1점				
			정직	-10점	
			감봉	-7점	
			견책	-5점	
			경고 (주의)	-3점	
			대내 명예실추, 규정위반, 형사사건	-2점	